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032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 : 김동아・김남근・민병덕
최기상・김우영・조 국
백승아・박홍배・김용민
김현정・김성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(2016년~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).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.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,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

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,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”를 “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”을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를 “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(생략)	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원사업자가 제4조, 제8조제1항, 제10조, 제11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-----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----------. ----------
1. 제4조, 제8조제1항, 제10조, 제11조제1항·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: 손해의 3배 이내	<삭 제>
2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: 손해의 5배 이내	<삭 제>
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③ -------제2항에도 불구하고----------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　략)	④ (현행과 같음)